

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	기관의 장
선	
람	

수 영 구 보 호외 제319호 2014.11.4(화)

고시

○ 주민대피지구의 지정(해제) 고시 ----- 2

회				
람				

· 발행 : 수 영 구 · 편집 : 문화공보과 (610-4071~3)

■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수영구 고시 제 88 호

주민대피지구의 지정(해제) 고시

「지진재해대책법」제10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대피지구를 지정(해제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4년 11월 4일

수영구청장

주민대피지구 지정(해제)				주민대피소	지정(해제)		
명 칭	위 치	침수 예정 면적(ha)	명 칭	위 치	수용인원 (명)	사유	비고
남천지구	남천동 일원 (삼익비치APT 201-315동) 0.4㎢	40		남천동로 100	1,000	지진해일에 의한 인명파해 최소화	
			코오롱하늘채 APT부지	남천동로 41	1,000	지진해일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	
광안지구	광인리해수욕장 일원 0.1㎢	10	광안초등학교	광안로21번가길 35	1,500	지진해일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	
			한바다중학교	광안로21번기길 57	1,500	지진해일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	
	광안리해수욕장, 수변공원 일원 1.4㎞	140	진조말산	광안해변로 386	1,000	지진해일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	
			백산	광남로257번길 58	3,000	지진해일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	